

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한 :

14일 이내

※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·면·동장이 작성합니다.

농어업인 대상자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					
	세대주와 관계			연 락 처			
농어업인 확인	농어업인 해당일	년 월 일 (□ 경영체등록일, □ 기타 읍·면·동 확인일)					
	농어업인 구분	☐ 농업인(축산업, 임업, 법인종사자 포함), ☐ 어업인(법인종사자 포함)					
	농어업 규모	농지	m ²	어선	톤	양식	ha
	연간 농수산물 판매액				연간 농어업 종사일		
	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	☐ 영농(어)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: 일 * 다만, 농수산물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활동 종사자 ☐ 농(어)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: 일 * 다만, 농수산물 유통·가공·판매활동 종사자 ※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					
농어촌 요건 확인 (읍·면지역 외 지역 농어촌 요 건 검토)	㉠ 일반 시 '동'지역으로 주거·상업·공업 이외의 용도지역				☐ 맞음, ☒ 아님		
	㉡ 자치구의 '동'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(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) ... 농어업인 지원(0~28%)만 가능, 농어촌경감(22%)은 해당안됨 ·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·보전 녹지지역 · 관리지역 중 생산·보전관리지역 · 농림·자연환경보전지역				☐ 맞음, ☐ 아님		
	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				☐ 맞음, ☐ 아님		
	㉣ ㉠, ㉡, ㉢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·개발제한구역·특별관리지역				☐ 맞음, ☐ 아님		
	㉤-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(다만, 특별관리지 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 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) · 제1종 전용주거지역 · 제1종 일반주거지역 · 보전녹지지역 · 자연녹지지역				☐ 맞음, ☐ 아님		
㉤-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				☐ 존치, ☐ 비존치			

☑ 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☑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
개인정보(고유식별번호 포함)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신청인(가입자)

(서명 또는 인)

확인자(읍·면·동장)

(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

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

1. 주소지가 읍·면지역이고,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2.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합니다.

작성방법

1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.
2.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
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.